



## 서울고등법원

### 제4민사부

### 판결

사 건 2025나207981 손해배상 등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송충열, 이광준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한성근, 황정훈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변론종결 2026. 1. 15.

판결선고 2026. 2. 1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5,200,000원 및 그중 22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



부터 2026. 2.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4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6. 2. 1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95,696,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3.부터 2026. 2.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040,000원 및 그중 453,6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143,64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1.부터, 76,8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각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sup>1)</sup>

1) 원고의 부대항소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선택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629,260,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3. 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6행부터 5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 나.항의 부당이득금 및 각 그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금액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 원고가 피고에게 제안한 금액인 1코어당 단가 600,000원을 기준으로 구한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 복제권 침해에 대한 직접 손해액 453,600,000원(= 1코어당 600,000원 × 756코어)과 ㉡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수적 손해로서 38개월의 유지보수료 상당 손해액 143,640,000원(=



453,600,000원 × 유지보수요율 10% × 38/12년)을 더한 합계 597,240,000원(= ㉠ + ㉡)이고, 피고의 부당이득금은 ㉢ 76,800,000원(= 1코어당 600,000원 × 128코어)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674,040,000원(= ㉠ + ㉡ + ㉢) 및 그중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 손해액 453,6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무단설치일 이후인 2019. 12. 1.부터, ㉡ 유지보수료 상당 손해액 143,64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최종 사용일 이후인 2024. 2. 1.부터, ㉢ 부당이득금 76,8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무단사용일 이후인 2023. 1. 1.부터 각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5면 10행의 "저작권법"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8면 글상자 아래 1행의 "마지막으로"를 " 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4행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사이트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적어도 '데이터베이스 서버 50개 이상'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매계약의 "50개 이상"이라는 표현은 피고가 요청한 서버 50대에 무상으로 제공받은 50코어가 더 있어 총 250코어라는 점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50대의



서버에서 위 250코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250코어에 대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준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데이터베이스 서버 50개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지위를 부여 받은 D이 2019. 5. 29. 피고에게 데이터베이스 교체 작업에 따른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견적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모듈을 최신 모듈로 업데이트 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교체 전후로 피고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수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하는 이 사건 구매계약의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에게 "J DB 서비스 작업계획. (1) C v3.0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J\_DB 서비스 프로세스 패치 진행. 진행 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이메일에서의 "진행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은 피고가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50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하여 패치를 진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가 250코어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추가 라이선스 비용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0면 13행부터 11면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3, 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3. 18. 피고와 유사한 민간기업인 H 주식회사와 총 788코어를 증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641,250,000원으로 정한 사실, 위 계약상 이 사건 프로그램의 1코어당 단가(액티브서버 부분 기준)는 1,041,514원인 사실, 원고는 2023. 3. 24. 피고에게 사용을 잠정 허가한 128코어까지 합하여 총 884코어에 관하여 1코어당 600,000원의 보상을 제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기준으로 제시한 갑 제13호증의 2019~2020년 계약 목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로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인 7,000여건 중 일부에 불과한 점<sup>2)</sup>, ② 위 2019~2020년 계약 목록을 보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1코어당 단가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마다 매우 다르게 정해졌음을 알 수 있고, 1코어당 단가의 변동폭이 매우 커 대표 사례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 ③ 더욱이 뒤에서 상세히 살펴볼 바와 같이 위 2019~2020년 계약 목록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버전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에 관한 계약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시한 금액도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한 금액인 점, ④ 원고 역시 고객과 협상할 때마다 계약의 시기, 내용, 규모, 시장 상황, 고객사의 지위, 할인방식, 신규계약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이 변동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1코어당 60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2024. 9. 6. 자 준비서면 3면 참조.



○ 제1심판결 11면 아래에서 3행부터 1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먼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에 대한 직접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1코어당 3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26,800,000원(= 1코어당 300,000원 × 756코어)으로 정한다.

① 원고가 2011. 11. 29. F에 송부한 견적서에는 "위 견적은 대량의 물량인 점을 감안하여 금융권 견적방식의 Core당 물량DC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견적은 B(E그룹 표준보안 체계구축 건)에 한하여 제공되는 제안가입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위 견적서대로 이 사건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250코어를 납품하면서 무상유지보수 1년, 이후 유지보수요율은 연 10%로 정하는 조건으로 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② 이 사건 구매계약 당시 1코어당 단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코어를 기준으로 1코어당 단가를 1,500,000원으로 표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50코어를 무상제공하고 특별할인까지 반영하여 1코어당 단가는 380,000원(= 95,000,000원 ÷ 250코어)이다. 다만 위 금액에는 1년 무상유지보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③ 그런데 원고는 2019~2020년경에 이르러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업들의 증설 계약에서 100코어 이상 거래의 경우 평균적으로 1코어당 844,254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3호증). 다만 이 사건 구매계약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버전이 V3.0이었는데, 이후 2014년, 2020년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버전이 V5.0, V7.0로 업그레이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844,254원은 V3.0 버전에 대한 평균단가로 보기는 어렵다.



(단위: 원)

계약일	DB Safer 금액	구분	총 core 수	core 당 단가
2019. 8. 13.	272,650,000	증설	336	811,458
2019. 8. 14.	228,000,000	증설	312	730,769
2019. 11. 20.	131,950,000	증설	124	1,064,113
2020. 2. 6.	190,470,000	증설	158	1,205,506
2020. 3. 13.	123,000,000	증설	151	814,570
2020. 3. 18.	641,250,000	증설	788	813,769
2020. 8. 21.	81,000,000	증설	156	519,231
2020. 9. 7.	110,700,000	증설	192	576,563
2020. 10. 14.	64,000,000	증설	104	615,385
2020. 11. 2.	110,550,000	증설	127	870,472
2020. 12. 1.	148,000,000	증설	117	1,264,957
평균				844,254

④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추가 대금 관련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을 제5호증), D 측은 2020. 4. 16.경부터 2022. 5. 10.경까지 피고에게 합의조로 165,000,000원(1코어당 약 218,253원<sup>3)</sup>)에서 250,000,000원(1코어당 약 330,687원<sup>4)</sup>)까지의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사태를 중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23. 3.경 피고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갑 제20호증), 이때 2022. 12.경 사용을 잠정 허가한 128코어까지 합하여 총 884코어에 대해 1코어당 약 450,000원에서 600,000원선까지 논의가 오고갔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협의 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액의 기준이 될 1코어당 단가의 합리적인 범위는 212,000원과 600,000원 사이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다만, 위 견적들은 버전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한 가격인 점까지 고려하면 그 금액은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초과사용하였음이 확인된 2019. 11.경부터 2024. 1.경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삭제

3) 165,000,000/756

4) 250,000,000/756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초과사용분에 대하여는 상위버전 소프트웨어로의 업그레이드 혜택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⑥ 그 외 기타 제반 사정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 규모가 클 경우 단위당 단가는 낮아지는데 갑 제13호증에 정리된 계약에는 이 사건과 같이 700코어 이상이 거래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11년 기준 버전으로서 다소 오래된 것이고 이후 이 사건 프로그램은 몇 차례 업데이트가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손해액의 1코어당 단가를 300,000원으로 정한다.

⑦ 위반 수량의 경우, 피고는 2020. 4. 8. 원고에게 총 1005.5코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0.5코어는 1코어로 셈하여 756코어(= 1006코어 - 250코어)를 위반 수량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⑧ 이에 대해 피고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통상적인 내구연한이 8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 또는 부당이득액이 위 내용 연수 중 피고가 실제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른바 Paid-up 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사용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사용료가 책정되는 점, ㉢ 저작권자가 위법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권 침해행위를 조기에 적발하였다고 하여 오히려 손해액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수적 손해로서 38개월의 유지보수료 상당 손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정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증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 또는 D에게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유지보수료도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㉔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매자들로부터 직접 유지보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㉕ 원고가 D으로부터 유지보수료를 정산 받은 자료 또한 없으며, 구체적으로 얼마를 정산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점, ㉖ 이 사건 프로그램 구입계약에 항상 유지보수료 계약이 수반하고, 그 유지보수료율이 연 10%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㉗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초과사용분에 관하여 따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유지보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침해일<sup>5)</sup>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sup>6)</sup>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5)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포괄적으로 산정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침해행위 종료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추가 설치한 구체적인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늦어도 D이 2019. 11.경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초과사용을 알게 됨 전에 비추어 볼 때 그전에 최종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부대항소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14면 3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14면 4행의 "가."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4면 15행의 "이때"부터 15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때 피고의 이익 내지 원고의 손해액은 앞서 3. 다.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1코어당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부당이득금은 38,400,000원(= 1코어당 300,000원 × 128코어)이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로 인

---

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1.부터<sup>7)</sup>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sup>8)</sup>,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중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5,200,000원(= 손해배상금 226,800,000원 + 부당이득금 38,400,000원) 및 그중 22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2026. 2.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4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6. 2. 1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7)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128코어를 추가로 설치한 날짜를 알 수 없으나 피고는 2022. 12.경 원고에게 추가로 128코어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를 요청하였고 이를 추가 대금에 포함시켜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2022. 12. 31.이전에 128코어를 추가로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받았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그 초과 수량에 대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그 이용대가 상당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제1심판결이 이 법원에서 일부 변경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법원 판결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

2)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원고에게 2025. 6. 12. 629,260,59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가지급물로 수령한 629,260,591원은 이 법원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가지급물의 최종 지급일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총액 333,564,196원(= 원금 265,200,000원 + 지연손해금 68,364,196원)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295,696,395원(= 629,260,591원 - 333,564,196원)이 남게 된다.

(단위: 원)

원금	발생한 지연손해금	2025. 6. 12. 변제
226,800,000	62,727,287	$226,800,000 \times [5 + 194/365 (= 2019. 12. 1.부터 2025. 6. 12.까지)] \times 5\% = 62,727,287$
38,400,000	5,636,909	$38,400,000 \times [2 + 163/365 (= 2023. 1. 1.부터 2025. 6. 12.까지)] \times 6\% = 5,636,909$
합계	68,364,196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295,696,39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6. 13.부터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구태희

                 판사      김광남